

위기 도민 신속 지원을 위한  
2026년 「희망지원금」  
사업 안내



경 상 남 도  
(복지정책과)



# 목 차



<b>1편 「희망지원금」 사업개요</b> .....	<b>1</b>
1. 추진근거	
2. 추진방침	
3. 지원절차	
<b>2편 대상자 선정 기준</b> .....	<b>4</b>
1. 지원대상	
2. 소득·재산 기준	
3. 위기상황 정의	
4. 현장 확인	
5. 지원결정 및 지원	
<b>3편 항목별 지원내용</b> .....	<b>12</b>
1. 생계 지원	
2. 의료 지원	
3. 주거 지원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5. 기타 지원	

**4편 사후조사** ..... **15**

- 1. 사후조사 목적
- 2. 조사주체
- 3. 사후조사 시기
- 4. 사후조사 방법

**5편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 ..... **17**

- 1. 적정성 심사 목적
- 2. 심사기구
- 3. 적정성 심사 대상 및 시기
- 4.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5. 지원종료 결정
- 6.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7. 이의신청
- 8. 사후연계·관리

**6편 기타 유의사항** ..... **22**

**[붙임1] 시군별 예산 현황** ..... **23**

**【참고자료 - 각종 서식】**

- 1. 현장확인서 / 25
- 2. 소득재산 신고서 / 27
-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29
- 4.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무급휴직확인서 / 31
- 5. 대상자 지원 요청서 / 33
- 6. 대상자 통보서 / 34
- 7. 희망지원금 비용 청구서 / 35
- 8. 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 36
- 9. 이의신청서 / 38
- 10. 희망지원금 의뢰서 / 39
- 11.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 41
- 12.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 42

# 정부 및 희망지원금 사업 비교표

구 분	정부 긴급복지지원사업	희망지원금
추진근거	긴급복지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대 상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이 종료되면 재지원 제한 기간에는 동일한 종류로 다시 지원 불가(생계지원은 1년 경과 후)</li> <li>·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 종료된 때부터 3개월 경과 후 가능(생계지원은 6개월 경과 후)</li> <li>· 종료된 지원과 다른 종류의 지원은 재지원 제한 없이 연속 지원 가능</li> </ul>	정부형과 동일
대상자 선정 기준	소득	중위소득 75%이하 (1인 1,923천원)
	재산	지역별 일정 금액 이하 · 대도시 : 2억 4천/주거용재산공제액 6,9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천/주거용재산공제액 4,200만원 · 농어촌 : 1억 3천/주거용재산공제액 3,500만원
	금융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 * 생활준비금: 기준 중위소득 100%
지원절차	신청발굴→현장확인→지원결정 및 통보 →지급→사후조사→적정성 심사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신청발굴→(읍면동)현장확인→(시군)지원 결정 및 통보 →지급→사후조사→적정성 심사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급여종류 지원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비: 1인 783천원(최대6개월)</li> <li>· 의료비: 300만원 이내(최대2회)</li> <li>· 주거비: 지역별 상이(최대12개월)</li> <li>· 복지시설이용 : 최대6개월</li> <li>· 기 타: 교육비(최대2회), 연료비(최대6개월), 전기요금 해산비·장제비(각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계비: 1인 783천원(최대 4개월)</li> <li>· 의료비: 300만원 이내(최대2회 다른 질병)</li> <li>· 주거비: 지역별 상이(최대2개월)</li> <li>· 복지시설이용 : 최대2개월</li> <li>· 기 타: 교육비(1회) 연료비(최대 4개월), 전기요금 해산비·장제비(각1회)</li> </ul>
'26년 예산	33,750백만원 (국 27,000/도 3,375/시군 3,375) * 국 80%, 도 10%, 시군 10%	1,500백만원 (도 750/시군 750) * 도비 50%, 시군비 50%

# 2026년 개정사항

페이지	2025년	2026년
3	○ 신청·접수 - 정부형·희망지원금 동시신청·검토 후 지원유형 결정	○ 신청·접수 - <b>정부형·희망지원금 동시 신청하고, 정부형 선 검토 후</b> 지원 유형 결정
5	○ 금융: 일상생활유지 필요금액 (생활준비금)+1,000만원 이하	○ 금융: 일상생활유지 필요금액 (생활준비금)+ <b>1,200만원 이하</b>
18	4.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대상자의 생계곤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희망지원금 지원 여부 결정	4.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대상자의 생계곤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b>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b> 희망지원금 <b>지원 적정성 심사</b>
25	신규	(서식) 현장확인서 <b>사업 알게된 경로 추가</b>

※ 그 외 보건복지부고시 개정 및 '26년 기준중위소득 변경에 따라 생계지원액 및 소득·금융재산기준 변경

---

# 제1편 「희망지원금」 사업개요

---

## 1.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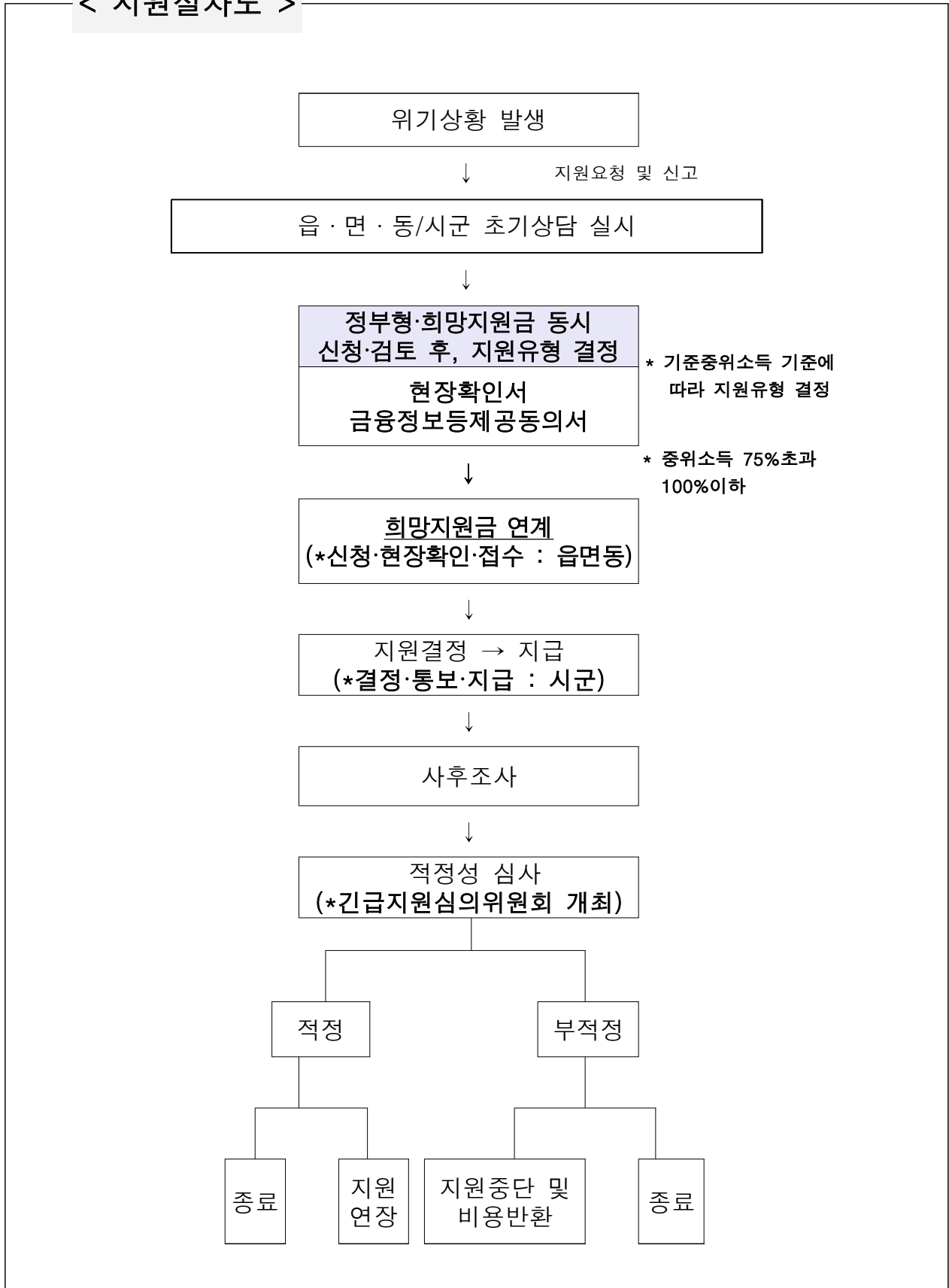
- 「긴급복지지원법」
-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 2. 추진방침

- (정부 긴급복지체계 확대) 정부 지원 제외된 위기 도민이 보장받을 수 있는 최후의 안전장치 마련(정부형·희망지원금 동시 신청·검토 후, 지원유형 결정)
- (선지원 후심사) 위기상황에 처한 자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요청일로부터 1일 이내)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 판단 후 신속하게 지원하고, 사후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지원결정 1일, 지원 1일 등 추가 2일 이내(총 72시간 이내)
- (중복지원 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 등 타 법률 중복지원 금지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소득 및 재산조사 절차 등을 준용하되 기존 법·제도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가구를 발굴·지원
- (단기 지원)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 (원칙) 생계지원 3개월, 의료·교육 지원 1회, 주거·시설이용 1개월, 연료비 지원 3개월(동절기)
  - (지원 연장)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긴급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연장 1개월, 의료지원은 상이한 질환에 대하여 1회 추가 지원 가능
- (가구단위 지원) 가구 단위로 산정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
  - 가정폭력·성폭력 또는 학대 등으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자에 대하여는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한 자 별도 분리지원 가능
- (민간자원 연계) 희망지원금 지원대상자 중 필요시 민간자원 및 사례 관리 등 적극 연계

### 3. 지원절차

#### < 지원절차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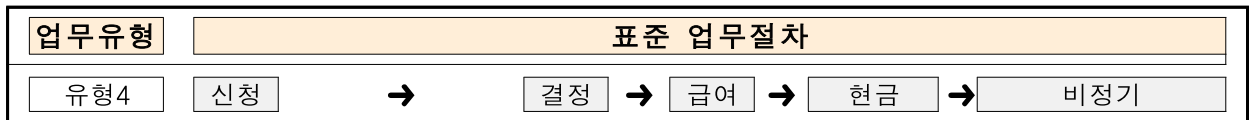
○ 신청·접수

- **정부형·희망지원금 동시 신청하도록 하고, 정부형 선 검토 후 지원유형 결정(신청서에 동시 신청)**

\* 희망지원금만 신청 시 금융재산(부채포함)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불가함에 따라 **정부형·희망지원금 동시 신청·검토 후, 지원유형 결정**

\* 신청·현장확인·접수 : 읍면동 / 결정·통보·지급 : 시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 표준 업무 유형(4종) >



\*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 연계 가능

○ 현장확인

- 위기 상황에 처한 자 또는 발견한 자(행복지킴이 등)가 신고 주체
- 읍면동 긴급지원담당공무원 등의 현장확인(요청일부터 후 1일 이내) 실시
  - ※ 읍면동 담당공무원 권한 확대(행복e음: 지원대상자선정관리→현장조사내역등록)
-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긴급지원 담당공무원은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 상황을 확인

○ 지원결정 및 지급(최대 72시간 이내)

- 시장·군수는 현장 확인 결과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

○ 사후조사(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내 1회 조사 실시)

- 대상자의 소득·재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지원이 적정한 지 여부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확보 조사
- 가구구성, 소득·재산 등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기록된 조사표 활용을 통해 선정기준 등 확인

○ 적정성 심사(지원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사후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 실시된 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 추가 연장결정
  - 대상자의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생계·주거·시설이용·연료비 지원은 연장 1개월, 의료지원은 상이한 질환에 대하여 1회 추가 지원 가능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추가연장이 결정된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종류와 연장기간 및 유의사항을 통지(서식6호)
- 지원중단 및 비용환수 결정
  - 적정성 심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 중단 및 지원한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법 제15조제1항)
    - ※ 긴급지원심의위원회가 긴급지원 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지원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용을 반환하지 않게 하거나 일부만 반환

## 제2편 대상자 선정 기준

### 1. 지원대상

- 위기 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구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과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위기 상황임에도 현행 법·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
  - 경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 외국인(법 제5조의2): 경남도 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 ㉢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難民)으로 인정된 사람
    - ㉣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 「난민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도적체류자
      - 특별기여자: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에 특별한 기여를 했거나 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했다고 인정하는 사람

## 2. 소득·재산 기준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단위 :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금액	2,307,814	3,779,362	4,823,132	5,845,264	6,801,047	7,700,356

- 재산기준 : 대도시 2억 4천, 중소도시 1억 5천, 농어촌 1억 3천만 이하

(단위 : 원)

지역	대도시(창원시)	중소도시(그외 시)	농어촌(군)
기준금액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241,000,000 (~310,000,000)	152,000,000 (~194,000,000)	130,000,000 (~165,000,000)

- 금융재산기준 : 일상생활유지 필요금액(생활준비금)+1,200만원 이하

(단위 :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본금액(a)	12,000,000					
생활준비금(b)	2,564,000	4,199,000	5,359,000	6,494,000	7,556,000	8,555,000
<b>기준금액(a+b)</b>	<b>14,564,000</b>	<b>16,199,000</b>	<b>17,359,000</b>	<b>18,494,000</b>	<b>19,556,000</b>	<b>20,555,000</b>

\* (생활준비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에서 백 원 단위 이하 절사 금액

- (지원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존의 제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함
- 타 사업에 동일한 목적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지급 불가

## 3. 위기상황 정의

※ 정부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준용

### < 위기사유 >

-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라.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3) 교정시설에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4)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5)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6)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차. 타 법률

-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 2) 「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가.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1) 주소득자

- 가구의 생계를 담당하던 사람으로서 가구구성원 중 소득이 많은 사람

2) 부소득자

-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

- 부소득자의 소득 상실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복지 생계 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3) 사망

#### 4) 가출 및 행방불명

-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된 사람
- 시장·군수가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한 경우

#### 5) 구금시설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 1개월 이상 구금된 경우

###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1) 의료지원

- 입원 또는 수술이 필요한 질병 또는 부상
-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
- 당일 외래진료는 제외하되,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2) 생계지원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근로할 수 없어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입원하지 않고 자가 등에서 치료하는 경우도 가능
  - 실업급여, 보험금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외
  - 중한 질병 또는 부상과 주(부)소득자의 근로소득 상실 간 사실관계 확인
  - 부소득자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소득 상실인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기 전 근로소득이 가구구성원별 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지원 가능

###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1) 가구구성원 :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단, 비동거 중인 법률상 배우자 포함)

#### 2) 노인학대, 아동학대, 장애인학대 등

- 노인보호전담기관·아동학대전담기관 등 유관기관에서 긴급복지지원 추천서로 의뢰한 경우, 현장확인서 대체 가능
-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경찰에 접수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현장 확인을 통해 종합적으로 피해사실 확인한 경우, 지원 가능

라.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마.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1) 화재 및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 경매·공매·재개발에 따른 강제철거 등으로 거주지에서 강제로 나가게 되는 경우
- 2) 거주하는 주택에 붕괴위험이 있어 거주자의 생존권이 급박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시장·군수가 확인한 경우
- 3)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재해구호법」 등 관련법에서 동일 내용으로 지원하는 항목과 중복 하지 않도록 유의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副所得者)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1) 가구구성원 중 주(부)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 신고
- 2) 요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단,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의 경우에는 발생한 때로부터 3개월, 화재보험 보상이 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
- 3)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의 경우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생계지원금액 이상인 경우
- 4) 휴폐업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1) 가구원 중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 상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실업급여가 종료 후에도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2) 요청일 기준 실직일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 실직 전 3개월 이상 매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 휴·폐업, 실직 사유의 생계유지 곤란 가구 지원제외 대상 >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실직 불인정
- 1개소 사업자 등록을 휴·폐업 하였으나 현재 1개소 이상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실제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휴·폐업자
- 사채업(대부업) 사업등록자

3) 임시·일용직 근로자는 경력증명서, 급여통장 사본, 직업소개소 기록,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으로 실직 사실 확인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실직에 대한 종합적 판단 필요

4) 질병·부상으로 인한 실직 시 진단서(치료 소요기간 명시) 확인으로 근로 가능 여부 고려

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0호, 2023. 3. 22)

1)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2)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

3)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가구구성원 중 주소득자가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한 후 휴·폐업신고를 한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휴·폐업신고일이 12개월 이내인 경우

다)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4)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가구원중 주소득자가 실직했으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실업급여가 종료 되었으나 계속적인 실직 상태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나)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실직한 날이 1개월 경과 12개월 이내이고,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

- 다)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적용제외 근로자 기준의 근로시간 이상인 경우
  - 라)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5)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된 경우 또는 가족이 미성년인 자녀(20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생 포함)나 미성년인 형제자매, 65세 이상인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정특례 대상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만 구성되는 경우
  - 나)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출소한 경우
- 6)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 노숙인 시설 및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을 사정하여 시장·군수에게 긴급지원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 나) 노숙을 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
- 7)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8)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9)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가) 자살의도자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에서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외의 관리가 필요한 자살위험자로 확인된 자를 말함

- 10)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4. 현장 확인

- 현장 확인 시 점검사항
  - 위기상황에 처했는지 여부, 다른 법률에 의한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 소득 및 재산 대략적 파악
- 현장 확인 방법 및 절차
  - 현장 방문이 원칙이나 유선 확인,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로 현장확인 절차를 갈음
  - 시·군, 읍면동 담당자, 경찰·소방서 등 행정기관, 의료기관, 복지 기관 등 관계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통(이)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

#### 5. 지원결정 및 지원

- 지원결정
  -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최대 72시간) 지원 결정
- 읍면동 결정권한 부여
  -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면동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대상자 결정(→ 시·군청으로 「희망지원금」 의뢰)
- 지원단위
  - 기본원칙: 가구단위 지원 원칙, 개인단위 지원 병행
  - 가구단위로 주지원, 부가지원 병행 가능
  - 주지원 간 복합지원 : 긴급지원대상자가 처한 위기상황에 따라 동시에 둘 이상의 주지원 결정 가능

## 제3편 항목별 지원내용

### □ 총괄

(단위 : 천원)

지원종류	가구원 수						지원횟수(월)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본	추가	
주지원	생계	783	1,286	1,644	1,994	2,324	2,636	3	1
	의료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1	1 (다른질환에 한함)
	주거	농어촌 189 중소도시 299 대도시 398	농어촌 250 중소도시 435 대도시 662	농어촌 330 중소도시 574 대도시 874				1	1
	시설이용	552	941	1,218	1,494	1,770	2,047	1	1
부가지원	교육	초 127, 중 180, 고 214+수업료·입학금						1	-
	기타	연료 15만원(동절기 10~3월) 해산 70만원, 장제 80만원, 전기요금 50만원 이내						3	1
								1	-

- ① (생계지원)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9,700원씩 추가 지급
- ② (주거지원)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③ 위기상황이 복합(複合)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 ④ 위기상황에 따라 주 지원 결정하고, 주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 부가지원 필요 시 병행지원 가능(부가지원 단독으로 지원은 안됨)

### 1. 생계 지원

- 지원대상: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1호에서 제9호까지, 「경상남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 지원기준: 가구원수별 금액 정액 지원(정부형 지원금액 준용)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783,000	1,286,600	1,644,000	1,994,600	2,324,400	2,636,700

- ※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라 정액 지급,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301,000원씩 추가
- ※ 2021년부터 생계지원 금액에 냉방비 포함

- 지원방법: 지원 결정 후 대상자 명의 금융계좌 입금 원칙
  - 예외적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물품 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 가능
- 지원횟수: 3개월,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추가 지원 가능

## 2. 의료 지원

- 지원대상: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지원내용: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소요된 비용
- 지원기준: 가구원수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 범위 내 병원 진료비, 의약품, 수술비, 약제비 등 지원 가능
  - 약제비의 경우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에 대한 지원만 인정
- 지원방법: 의료기관(약국 포함)에 비용 직접 입금 원칙
- 지원횟수: 원칙 1회, 상이한 질환에 한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 가능

## 3. 주거 지원

-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기준 : 아래 지원기준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 제공

(단위 : 원/월)

지 역	가구원 수		
	1~2인	3~4인	5~6인
대 도 시	398,900	662,500	874,100
중 소 도 시	299,100	435,600	574,200
농 어 촌	189,000	250,500	330,000

※ 가구원 수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대도시 105,800원, 중소도시 69,300원, 농어촌 39,800원씩 추가 지급

- 지원방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쳐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개인가정 위탁, 월세, 하숙, 여관 등 시장군수가 임시 거처로 인정(확인)되는 각종 주거형태를 의미

- 지원횟수: 1개월,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추가지원 가능

#### 4. 사회복지 시설 이용

- 지원대상: 위기상황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지원기준

(단위 : 원)

가구원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 위 지원기준은 상한액이며, 입소자가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시마다 286,400원씩 추가 지급

※ 긴급지원대상자가 1월 안에 퇴소하는 경우, 일단위로 지급

- 지원방법: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비용 지급(원칙)
- 지원횟수: 1개월, 위기상황 지속 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월 추가 지원 가능

#### 5. 기타 지원

- 지원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장제비, 전기요금 등

(단위 : 원)

지원내용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초 127,900 / 중 180,000 고 214,000 및 수업료·입학금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지원횟수	분기 단위로 1회 지원	동절기(3개월)	각 1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함

- 본 사업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별적 사례\*에 대해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5조 9호(명절·연말·기념일의 위문금품), 10호(원거리 통학교통비) 등

- 지원방법: 현금 또는 현물 지원

---

## 제4편 사후조사

---

### 1. 사후조사 목적

- 희망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또는 재산 등을 조사하여 우선 실시한 지원이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
-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아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호, 보호 또는 지원으로 연계 보호하기 위함

### 2. 조사주체

- 시·군 긴급복지(희망지원금) 담당

### 3. 사후조사 시기

- 희망지원금 지원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조사
  - 실직, 폐업, 생계곤란 등의 위기사유로 지원받는 가구의 경우 취업상황 및 지출실태 등을 수시 조사하여 부정수급 방지 철저
  - 단, 금융재산자료의 경우 1개월 내 회신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선지원 후 연장 필요시 우선 지원연장 후 금융재산자료 조회 즉시 지원의 적정성을 확인

### 4. 사후조사 방법

- 소득·재산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활용
- 자료제출 요구는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 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
- 조사 시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 가구원 확인: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 행방불명 신고접수증, 출생신고서 등

- 소득, 취업, 퇴직 확인: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급여통장 사본, 국세청 소득신고자료, 직업 소개소 취업기록확인서, 출근부 등
  - 사업소득 확인: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발행), 휴·폐업 확인서 등
  - 재산확인: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사본, 거래 금융기관의 통장 사본, 잔액증명서, 부채증명원, 보험가입증명서, 보험해약확인서 등
  - 기타: 진단서·의료비 영수증, 입학금·수업료 납입고지서, 월세지출 (임대차 계약서), 경력증명서, 출소증명서 등
-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관련 사항을 사후조사 보고서에 기재하여 적정성 심사
  - 고의적으로 서류 제출을 미루거나 미제출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을 사전 고지
- 개인정보의 보호(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제19조)
- 긴급지원의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제5편 적정성 심사 및 사후관리

---

### 1. 적정성 심사 목적

- 희망지원금제도의 '선지원 후조사의 원칙'을 악용하는 부적정 사례의 발생을 차단하여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전한 재정집행을 수행하기 위함

### 2. 심사기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등
  - 시군 실정에 맞는 심사위원회를 적정성 심사기구로 지정

### 3. 적정성 심사 대상 및 시기

- 적정성 심사 대상
  - 선지원 건
  - 적정성 심사 이후 가구원 변경 등으로 재심사가 필요한 건
  - 위원회 심사 결과 당초 적정한 지원으로 결정되었으나, 금융에 관한 조사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희망지원금 대상자의 진술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시장·군수가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 적정성 심사 제외 대상
  - 위기상황 발생 및 사후조사 결과 공제항목 반영한 소득·재산금액이 긴급지원 기준을 명백히 충족한 경우 적정성 심사 생략 가능
  - 부가지원에 대한 지원 적정성 심사는 주지원 적정성 심사로 같음
- 적정성 심사 시기
  - 시장·군수의 사후조사 완료 후 실시하되 선지원의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완료

## 4. 적정성 여부 판단기준

- 위기사유 발생과 생계유지 곤란에 대한 적정성 판단
    -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지에 대한 산술적 심의가 아닌 희망지원금 대상 가구의 소득·재산이 기준에 초과된다 하더라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 긴급성, 대상자의 생계곤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희망지원금 지원 적정성 심사**
    - 적정성 심사 결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체 없이 지원 중단 및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
    - 적정성 심사 결과 긴급지원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지원 중단 및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음
- \* 긴급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환수면제 가능

< 고의 또는 중과실, 거짓 및 부당사례(예시) >

- 담당공무원의 고의·중과실 : 지원조건으로 금품 수수, 신청자가 고의로 소득·재산을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묵인,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 하지 않고 사망자 또는 타인에게 지원한 경우 등
- 신청인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지원을 받은 경우, 취업사실을 고의로 숨겨 소득을 은닉하거나, 자기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경우,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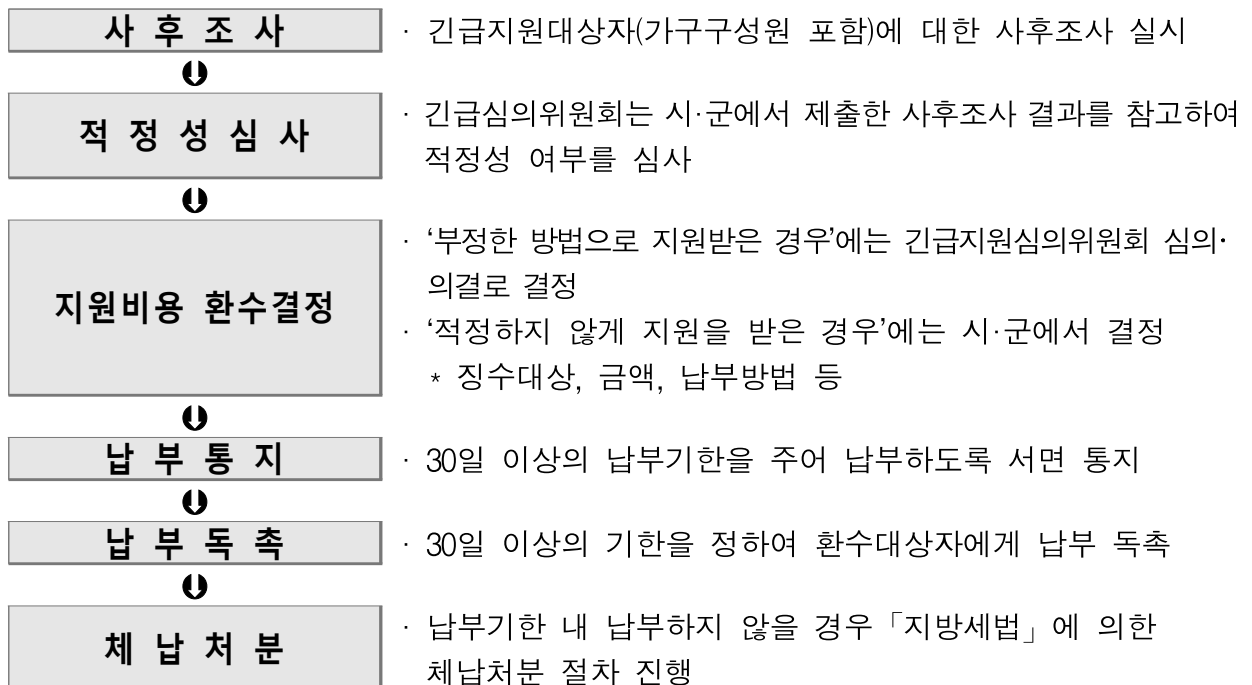
## 5. 지원종료 결정

- 시군/읍면동 공무원 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 위원이 지원기간 중 위기상황 해소 여부 판단, 정기적 대상자의 생활실태 파악
  - 3개월간 1~3회 확인하여 위기상황 해소 여부 판단
  - 위기상황이 해소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군수가 지원종료 시점 결정
  - 질병·부상의 회복, 취업여부, 주소득자의 복귀, 출산 경과, 재혼 등 위기해소를 위한 노력, 의지와 다른 지원 제도로 전환 필요 등을 판단하여 지원종료시점 결정
- 매월 급여지급 전 인적변동사항 확인
  - 사망, 타 시도 전출 등의 경우 지원종료 결정, 필요시 환수 조치

## 6.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결정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 의도적인 거짓으로 위기상황을 꾸며 선지원을 받은 경우
  - 취업사실 및 소득, 본인 소유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자기 소득·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재산을 고의로 은닉한 자
  - 공증사채 등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등
- 적정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집행상의 오류 등으로 적정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 판정 및 환수 결정 : 시장·군수
  - 지원 중단 후 지원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현장 확인 시 소명 내용과는 다르지만 고의적인 거짓이 없는 경우, 지원기준을 초과하여 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자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수여부 및 규모 결정

### ○ 환수에 따른 징수절차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납부하도록 통지

\* 시장·군수의 반환 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에 의한 이의신청제도에 따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시·군은 지원비용 환수대상자의 생활실태, 가구여건 등을 감안하여 분할 납부 가능
-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서 처리
- 징수금액의 처리
  - 당해연도 지원비용 징수금: 반납(여입) 처리
  - 과년도 지원비용 징수금: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으로 처리

## 7. 이의신청

- 이의신청 대상
  - 시장·군수의 지원결정내용(연장결정 포함)
  - 시장·군수의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
- 이의신청인
  - 긴급지원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
  - 긴급지원대상자 중 지원중단 및 비용반환 명령을 고지받은 사람
- 이의신청인 기한
  - 결정통보 및 비용반환 명령(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처리기관 : 도지사
- 이의신청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 효력의 소급
  - 이의신청의 대상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처분은 그 효력의 소급에 대하여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지원요청결과 통보일, 연장결정 통보일 및 비용반환 결정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 시장·군수의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의신청 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소급

- 이의신청 절차
  - 시장·군수(긴급복지지원 담당부서)을 거쳐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서 양식(서식9호) 작성
- 시·군 이의신청 처리
  -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군수는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송부
  -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부 불필요
    -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의 신청인이 신청 취하를 한 경우
    - 해당기관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취지에 따르는 처분이나 확인을 하고, 신청인에 통지하여 이의신청취하 동의서를 받은 경우
- 이의신청에 대한 도지사 처분
  - 이의신청서를 송부 받은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체 없이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서를 작성 하도록 함
    - 소속 관계공무원은 현장확인 시 사전에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준비하도록 안내
  - 이의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이의신청의 대상보다 이의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못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 등의 통지서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함
  - 처분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과 당해 시장·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

## 8. 사후연계 · 관리

- 의의
  - 희망지원금제도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음
    - 희망지원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장기적

빈곤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음

- 장기적 빈곤상황에 놓은 사람에게는 우선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제도 등 다른 공공부조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중복대상 관리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원칙적으로 희망지원금 지원 대상 제외,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는 긴급한 위기상황 발생 시 정부 긴급복지지원 검토 후 희망지원금 연계
    - 희망지원금 선 지원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 결정된 경우 희망지원금 일할분과 국민기초 생계급여 월급여를 비교
  - ⇒ 해당 월의 희망지원금이 기초생계급여보다 많으면 희망지원금만 지급, 희망지원금이 기초생계급여보다 적으면 월 차액분의 기초생계급여 추가 지급
- 민간기관 지원 연계
  - 위기상황이 지속될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 지원사업 적극 연계, 관리
- 전출입자 관리
  - 전출지 : 전입지로 전출사항 통보(지원 관련서류 첨부)
  - 전입지 : 지원대상 위기상황 지속여부, 가구원 변동사항 등 검토 후 급여 지급

---

## 제6편 기타 유의사항

---

- 시군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이를 위해 정부형 긴급복지 예산 소진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 '도'와 협의를 거쳐 예산 여건 등을 고려하여 희망지원금으로 지원 연계 가능
- 본 안내서에 없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 및 「2026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준용

**참 고**

**시군별 예산 현황[2026년 당초예산(안)]**

(단위 : 백만원)

시군명	사업량(가구)	계	도비	시군비
<b>계</b>	<b>1,154</b>	<b>1,500</b>	<b>750</b>	<b>750</b>
창원시	100	200	100	100
진주시	160	160	80	80
통영시	21	116	58	58
사천시	93	93	46.5	46.5
김해시	250	250	125	125
밀양시	40	103	51.5	51.5
거제시	140	140	70	70
양산시	200	200	100	100
의령군	7	20	10	10
함안군	16	38	19	19
창녕군	24	24	12	12
고성군	6	18	9	9
남해군	22	20	10	10
하동군	20	20	10	10
산청군	10	35	17.5	17.5
함양군	17	23	11.5	11.5
거창군	8	20	10	10
합천군	20	20	10	10

## 참고자료 서식

---

1. 현장확인서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무급휴직확인서
5. 대상자 지원 요청서
6. 대상자 통보서
7. 희망지원금 비용 청구서
8. 대상자 사후조사 보고서
9. 이의신청서
10. 희망지원금 의뢰서
11. 급여 대리수령 신청서
12.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정부형·희망지원금 동시 신청·검토 후, 지원유형 결정**

(앞면)

현 장 확 인 서							처리기간		
<input type="checkbox"/> 긴급복지지원사업					<input type="checkbox"/> (경남)희망지원금				지체없이
요청인 또는 신고인	성 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 소								
위기상황	(연락처: )								
	<input type="checkbox"/> 제1호 주소득자(主所得者)사망·가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input type="checkbox"/>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유기·학대				<input type="checkbox"/> 제4호 가구구성원의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input type="checkbox"/>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input type="checkbox"/> 제6호 주(부)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input type="checkbox"/> 제7호 주(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input type="checkbox"/>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이혼)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전)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출소)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단기 노숙)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복지사각지대발굴)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통합사례관리)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자살고위험군)				<input type="checkbox"/>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범죄피해주거이전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input type="checkbox"/> 특별법(이태원참사피해자)				
긴급지원 대상자	대상자와의 관계 본인	성 명	생년월일	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직업	월소득	비고	
※ 표에 미기재된 가구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등초본 확인 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지원 결정									
사업 알개된 경로	<input type="checkbox"/> 방송, 신문 등 언론 보도 <input type="checkbox"/> 담당공무원 안내 <input type="checkbox"/> 지인 소개 <input type="checkbox"/> 이·통장 등(마을 인적안전망) 소개 <input type="checkbox"/> 병원, 학교 등 기관 소개 <input type="checkbox"/> 도청 및 시·군청 홈페이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p>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2.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지원이 부적정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서에 기재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만일 이와 다를시 형사상, 민사상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p> <p>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본 확인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나.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밖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 포함)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다.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p> <p>4. 긴급복지지원 요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 일체는 반환되지 않습니다.</p> <p>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합니다</p>									
긴급(희망)지원대상자:					(서명 또는 인)				





[서식 제2-1호] 공통서식

## 소득·재산 신고서 [□신규 □변경]

\* 아래 소득, 재산,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가구원 성명 <sup>1)</sup>								
소득 사항	근로 소득	상시근로	원	원	원	원	원	
		일용근로	원	원	원	원	원	
	사업 소득	농업소득 (주재배작물명)	(                      )	원	(                      )	원	(                      )	원
		임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어업소득		원	원	원	원	원
	재산 소득	기타(자영업)		원	원	원	원	원
		임대소득		원	원	원	원	원
		이자소득		원	원	원	원	원
	기타 소득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무료임대)		원	원	원	원	원
		공적이전소득 <sup>2)</sup>		원	원	원	원	원
재산 사항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원	토 지	원	원	원	
	선 박		원	입목재산	원	원	원	
	항공기		원	어업권	원	원	원	
	자동차		□ 차량명(                      ) □ 용도 (생업용/장애인용/자가용)					
	임차보증금		□ 전·월세보증금(                      원) □ 상가보증금(                      원) □ 기타(                      원)					
	금융재산		원					
	동 산		□ 소 (    마리,                      원) □ 돼지(    마리,                      원) □ 기타가축(    마리,                      원) □ 종묘(                      원) □ 기계·기구류(                      원) □ 기타(                      원)	분양권	원	원	원	
	기타 산정되는 재산		조계 (A-(B+C+D))		원	원	원	
			(A) 일정기간 <sup>3)</sup>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		원	원	원	
			(B)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		원	원	원	
(C) 부채 상환액			원	원	원			
(D)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		원	원	원	원			
부 채	금융기관 대출금		원	금융기관의 기관 대출금		원		
	임대보증금		원					
	개인간 부채		□ 판결문·화해·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                      원)					
가구특성 지출비용 <sup>4)</sup>		□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피부양보조금 (                      원) □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 (                      원) □ 대학생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                      원)						
위와 같이 소득·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귀하						신청인(대리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1)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2) 공적이전소득: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액  
 3) 기초연금, 장애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다만,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  
 4) 가구특성 지출비용: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 7)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8)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9)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10)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11)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1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1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1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1)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3개월 입금액 총액\*  
\*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
  - 2)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3)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 최종 시세가액
  - 4)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5)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 6)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또는 할인액
2. 신용정보
  - 1)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2)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1) 보험증권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2) 연금보험 :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8항, 「기초연금법」 제11조제4항, 「장애인연금법」 9조제8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4조, 「아이돌봄지원법」 제24조제3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이 동의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 「기초연금법」 제10조, 「장애인연금법」 제8조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 「의료급여법」 제3조의3 제2항, 「주거급여법」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향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3조 및 「기초연금법」 제11조제2항, 「장애인연금법」 제11조,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주거급여법」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의자(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 「기초연금법」 제1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및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의3,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3 제6항,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5조제6항, 「의료급여법」 제3조의3제3항,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6, 「주거급여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좌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b>고용·임금·무급휴직 확인서</b>						
피 고 용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가 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일당제	1 일 임 금: 원			
			월평균 고용일수: 일			
		월급제	기 본 급	월분	월분	월분
			각 종 수 당			
			기 타 금 액 (여비, 차량유지비 등)			
			합 계 금 액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input type="checkbox"/> 가 입		<input type="checkbox"/> 미가입		
무급휴직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p style="text-align: center;">위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무급휴직 중임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사 업 장 명: _____</p> <p>사 업 장 주 소: _____</p> <p>사업자등록번호: _____      전화번호: _____</p> <p>(영업허가번호)</p> <p>사 업 주 명: _____      (서명 또는 날인)</p>						
<p><b>※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b></p> <p>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함.</p>						

[서식 제5호]

희망지원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해산비 <input type="checkbox"/> 장제비 <input type="checkbox"/> 전기요금		지원 요청서		처리기간
						4일 이내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전화 : )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해산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해산 (예정)일	년	월	일	해산원인	<input type="checkbox"/> 출산 <input type="checkbox"/> 사산
사망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망일	년	월	일	사망원인	
전기요금 요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고지서 발급기관명		요청금액			
위와 같이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긴급복지 부가지원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나 직권 요청인 : (서명 또는 인)						
<b>시장·군수 귀하</b>						
구비서류	1. <b>해산비 지원요청서:</b> 긴급지원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 지급 - 출생증명서 1부(사산 시 의사·한의사 또는 조산사의 사실확인서나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출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2. <b>장제비 지원요청서:</b> 장제를 행하거나 행한 사람이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 요청한 경우 지급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또는 인우증명서 1부 ※ 주민등록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으면 구비서류 없음 3. <b>전기요금 지원요청서:</b> 긴급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주택용 체납 전기요금을 지원요청한 경우 지원 -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고지서 1부					

지원요청결과  
**희망지원금 대상자 [  지원변경결정 ] 통보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 )		

지원 결정 내용	<input type="checkbox"/> 희망지원금 요청자				
	<input type="checkbox"/> 지원적합	지원종류		지원금액	
		지원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지원 안내	<p>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되었으므로, 결정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p> <p>이후 거주지역, 세대구성, 소득·재산 등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셔야 하며, 지원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사후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이 중지(환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input type="checkbox"/> 지원 부적합	부적합사유			
		지원 부적합 안내	<p>귀하가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현장확인한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희망지원금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p> <p>이후 소득·재산 등의 변동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요청하실 수 있으며, 희망지원금 기준에 적합할 시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input type="checkbox"/> 현 희망지원금 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지원변경	변경일자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안내					
<input type="checkbox"/> 지원중지	중지일자	년 월 일 부터			
	중지내용				
	중지사유				
	중지안내				

희망지원금 대상자의 긴급지원 요청, 연장 및 중지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문의 전화번호 :

시장·군수 (인)







[서식 제9호]

<b>이 의 신 청 서</b>					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			
대 리 신 청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전화번호 : )			
처 분 내 용		<input type="checkbox"/> 선정 <input type="checkbox"/> 보장변경/중지/정지/상실 <input type="checkbox"/> 환수 <input type="checkbox"/> 기타			
처분이 있음을 안 연 월 일		년      월      일			
처분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연월일		년      월      일			
처 분 의 내 용 또 는 통 지 된 사 항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위와 같이 이의신청을 합니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16조 준용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b>시장·군수 귀하</b>					
구비서류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 수 료 없 음

[서식 제10호]

희망지원금 의뢰서					요청구분	<input type="checkbox"/>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input type="checkbox"/>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의 뢰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거주형태	<input type="checkbox"/> 전세 <input type="checkbox"/> 월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연락처			
	주 소							
가 구 구 성 원	대상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미동거 사유)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연락처 (직장 등)
						직업	직장명(학교명)	
	본인							
※ 배우자 관계( <input type="checkbox"/> 법률혼 <input type="checkbox"/> 사실혼 <input type="checkbox"/> 별거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								
지 원 이 력	* 최근 2년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기간:                    ~                    )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제공연계: <input type="checkbox"/> 기타:							
본 인 진 술	<현재 생활실태: 소득활동, 재산사항, 지원요청내용, 향후계획 등 포함>							





##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	------	------	----

신청인 (지원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		

긴급지원 수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계좌번호가 표시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
------	----------------------------------

### 처 리 절 차

